

제224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17.2.27.)

일반의안 검토 보고서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차 상 옥]

목 차

1	거창화강석 산업특구 해지 신청에 관한 의견 제시안 ----	1
2	거창사과전망대 거창농특산물 판매장 민간위탁 동의안 --	7
3	거창푸드종합센터 관리위탁 기간연장 동의안 -----	14

[거창화강석 산업특구 해지 신청에 관한 의견 제시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2017. 2. 15.
- 나. 제 출 자: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2017. 2. 16.

2. 제안이유

-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 특별법」 제5조, 제51조에 따르면 특구의 지정을 해제하려면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하고 있어 거창화강석 산업특구 해지에 따른 군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함.

3. 특구개요

- 명 칭: 거창화강석 산업특구
- 위 치: 거창군 위천면 남산리 105-2번지 외 116필지
- 면 적: 585,926㎡(채석 409,155㎡/가공 176,771㎡)
- 지정기간: 2007년 ~ 2016년(2차 연장)
 - 당 초: 2007년 ~ 2010년
 - 1차 연장: 2011년 ~ 2013년
 - 2차 연장: 2014년 ~ 2016년
- ※ 지정일: 2007. 10. 10.(재정경제부 고시 제2007-53호)

○ 규제특례 적용사항

- 특구법 제22조: 도로교통법(교통제한 조치 등)
- 특구법 제27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임도 설치 허용)
- 특구법 제36조의8: 특허법(특허출원 시 우선 심사 허용)

○ 해제사유: 특구기간 종료 및 특구지정 목적이 대부분 달성
(2016. 12월 말)

※ 주민공청회 의견청취 결과(2017.1.19.): 관계업체 및 주민들의
반대의견 없음.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 특례법」

○ 2017. 2월 현재 특구지정 현황

특 구 명	분 류	지정일	지정기간	비고
화강석	산업·연구	2007.9.28.	2007년~2016년	기간만료
사과·딸기	향토자원	2013.8.30.	2013년~2017년	
향노화	관광레포츠	2016.3.18.	2016년~2020년	

5. 검토의견

○ 본 특구해지에 따른 의견 제시안은 2007년 특구지정 후 기간을
2회 연장하여 거창화강석 산업의 활성화 등 당초 특구지정
목적이 대부분 달성되었으며,

○ 또한 특구지구 내 산업단지를 신규산업 진출 등 단지 활성화를
위하여 일반산업단지로 전환 요구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으며,

최근에 개최한 주민공청회 결과 화강석 관계자 및 주민들은 대체적으로 특구해지에 공감대가 형성되었으며,

- 특히 중기청에서는 지역 간 형평 등을 감안하여 1개 지방자치단체에 특구지정을 3개로 제한하고 있어 우리 군 다른 특화 산업을 특구로 지정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 수 있도록 화강석 특구 지정을 해지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으나, “산업단지 주변 분진·소음 등 지역주민들의 민원해소 대책과 거창화강석 산업이 위축되지 않도록 종합적인 대책 수립” 등 의견 제시가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음.

6. 참고자료



관련법령 발췌

□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 특례법

제4조(특구의 지정신청) ①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특화사업을 추진하려면 지역특화발전특구계획(이하 "특구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중소기업청장에게 특구지정을 신청하고, 중소기업청장으로부터 특구계획의 승인 및 특구지정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특화사업을 추진하려면 시장·군수·구청장과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동으로 특구계획을 작성하여 특구지정을 신청하고, 중소기업청장으로부터 특구계획의 승인 및 특구지정을 받을 수 있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특구지정을 신청하였으면 그 특구계획을 관할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시·도지사는 그 특구계획에 관한 의견을 중소기업청장 또는 제45조에 따른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이하 "특구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할 수 있다.

제5조(주민 등의 의견청취)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구의 지정을 신청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특구계획안을 작성하여 20일 이상 공고하고, 공청회를 열어 주민·기업·관계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구의 지정을 신청하려면 특구계획안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6조(특화사업자의 지정신청) ① 제5조제1항에 따라 공고된 특구계획안에 따른 특화사업을 하려는 자는 특구의 지정을 신청하는 지방자치단체[제4조제2항에 따라 특별시·광역시·도(이하 "시·도"라 한다)와 그 관할 구역의 시·군·구가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시·군·구를 말하며, 그 밖에 공동신청하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이하 "신청지방자치단체"라 한다]의 장에게 특화사업자의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신청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특화사업자의 지정을 신청 받으면 30일 이내에 신청자를 특화사업자로 특구계획에 포함시킬 것인지를 결정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화사업자의 지정신청방법 및 그 결정·통보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제22조(「도로교통법」에 관한 특례) ① 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차와 우마(牛馬)의 도로통행 금지 또는 제한 등의 조치를 하여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치를 요청받은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도로교통법」 제6조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7조(「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① 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화사업에 필요하면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임도(林道)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같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산림관리기반시설의 타당성 평가는 산림청장이 제9조에 따른 협의를 할 때에 한다.

② 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임도를 설치한 경우에는 산림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6조의8(「특허법」에 관한 특례) 특허청장은 특화사업과 직접 관련된 특허출원에 대하여는 「특허법」 제61조에도 불구하고 심사관으로 하여금 다른 특허출원보다 우선하여 심사하게 할 수 있다.

제51조(특구의 지정해제 등) ① 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구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승인된 특구계획의 내용을 변경하려면 제4조부터 제6조까지를 준용하여 중소기업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특구계획을 변경할 때에 추가되는 특례조치가 지역주민의 재산권 행사 등을 제한하지 아니하거나, 제3장제2절의 규제특례가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 제5조와 제6조에서 정한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중소기업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특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특구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특구계획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아니한다.

1. 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가 특구를 운영할 때 법령을 위반하거나 특구계획과 다르게 운영하는 경우

2. 해당 특구 또는 특화사업에 대한 규제특례의 적용이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하는 경우

3. 특구지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4. 토지이용에 관한 규제특례가 특구계획의 주된 내용인 경우로서 특화사업자가 제7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특구지정 고시일부터 2년 내에 특구토지이용계획을 제출하지 아니하여 지정된 특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5. 특구지정 목적이 달성된 날부터 1년이 지난 경우
 6. 제1항에 따라 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신청하는 경우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③ 제2항(제5호와 제6호의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라 특구지정이 해제된 지역을 관할하는 시·군·구는 3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는 이 법에 따른 특구로 지정될 수 없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구의 지정해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거창사과전망대 『거창농특산물판매장』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2017. 2. 15.
- 나. 제 출 자: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2017. 2. 16.

2. 제안이유

- 거창사과전망대 내에 설치되는 『거창농특산물판매장』을 민간위탁하여 관리·운영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관리운영 능력을 갖춘 거창군 농업인으로 구성된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 운영하기 위함.

3. 위탁개요

- 시 설 명: 거창사과전망대 거창농특산물판매장
- 위 치: 거창한휴게소 사과전망대(광주방향)
- 판매장 면적: 64.73m²
 - 주요시설: 판매대, 진열장, 쇼케이스 2대, 냉장고, 진열대, 냉난방 공조시설, POS 시스템 등
- 위탁대상
 - 농특산물판매장 시설 유지·관리, 농특산물 판매 및 홍보
- 위탁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3년 이내

4. 관계법령

-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5조, 제6조
-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17조, 제24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4조

5.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광주-대구고속도로 거창한휴게소(광주방향) 사과 전망대 내에 설치되는 『거창농특산물판매장』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민간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서,
-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르면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군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등”을 민간위탁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제10항에 따르면 “사무의 민간위탁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의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이 함께 혼용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동 운영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르면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지역에서 생산하는 농특산물 판매와 홍보 등을 통한 농업인 소득향상을 기하기 위하여 지역 내 농업인단체 등에 『거창농특산물판매장』을 3년간 민간위탁함에 따른 관련규정상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6. 참고자료

관련법령 발췌

□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등) ① 군수는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사무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군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군민생활과 직결된 단순행정사무

(개정 2013.6.12)

② 군수는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제6조에 따른 거창군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민간위탁 할 수 있다.(개정 2013.6.12)

③ 군수는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는 국가·도위임사무는 위임기관의 장의 승인을 미리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군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이 경우 자치사무에 있어 같은 수탁기관에 재계약 할 때에도 위탁기간 만료일 60일 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및 후단신설 2013.6.12)

④ 군수는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3.6.12.)

제5조 (수탁기관의 선정) ① 군수는 민간위탁사무의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인력과 기구, 재정부담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의 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지역간 균형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한 기관을 수탁기관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제1항의 심사기준 및 심사항목별 배점기준 등을 명시하여 공고한다.(전문개정2013.6.12)

③ 수탁기관을 공개모집할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제출 하도록 하고, 해당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제1항의 선정기준에 따른 적격기관을 선정하도록 한다.(개정 2013.6.12.)

제6조(민간위탁심의위원회) ① 군수는 민간위탁 대상사무 선정, 수탁기관 선정, 같은 수탁기관에 재계약 시 적정여부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위원 수의 4분의 3이상이 되어야 한다.

1. 군 소속 공무원 및 군의회 의장 추천 군의원

2. 대학교수, 변호사 등 민간위탁 대상사무와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는 민간위탁 사무의 성격에 따라 소관부서에서 구성하고, 수탁기관 선정 및 평가 등이 끝나면 자동 해산한다.

⑤ 위원회는 사업계획서의 심사 및 현장확인과 민간위탁 신청인에 대하여 필요한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⑥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 「거창군 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8. 1. 14 개정 2013.6.12)

□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의회동의) ①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3항에 따라 민간위탁 하는 경우 위탁하려는 사무의 처리 소관부서(직속 기관, 사업소, 읍·면을 포함한다. 이하 “소관부서”라 한다)가 수탁기관 모집을 위한 공고 전에 별지 제1호서식의 민간위탁 동의 요구안을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2항에 따른 민간위탁 동의 요구안의 제출절차는 의회에 제출하는 일반안전의 예에 따른다.

□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제1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군수가 법 제27조제1항 및 영 제19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하는 경우에는 관리위탁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관리위탁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탁비용 산정 등에 대하여는 법 제94조의2에 의한 「공유재산 운영기준」에 따른다.

1. 재산의 표시, 사용, 수익허가 범위 및 위탁내용

2. 관리위탁을 받은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의 성명 및 주소

3. 관리위탁 기간

4. 위탁료, 사용료 등 관리위탁에 따른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5. 관리수탁자의 권리 및 의무와 업무 범위, 계약내용 위반 시의 의무이행 등
(항전부개정 2014.10.01)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관리수탁자가 영업 수익을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다시 대여하여 사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영 제14조에 따라 사용료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2014.10.01)

③ 관리수탁자가 법 제27조제5항에 따라 사용,수익허가 받은 재산을 제3자에게 전대하는 경우 관리수탁자는 위탁계약 범위에서 전대 받은 자에게 일정한 사용료와 관리비용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자의 사용료는 위탁계약 범위에서 관리수탁자가 영 제14조에 따른 사용료율과 평가방법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예상수익을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다.(항전부개정 2014.10.01 2015.12.10.)

④ 법 제27조제6항에 따라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리수탁자가 이용료를 직접 징수하여 관리에 드는 경비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2014.10.01. 2015.12.10.)

⑤ 관리수탁자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법 제27조제4항 및 영 제21조와 입찰조건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증대된 이용료 수입을 배분할 수 있다.(2014.10.01)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원형이 변경되는 대규모의 수리 또는 보수는 군이 직접 시행한다.

제24조(대부료율) ① 영 제31조에 따른 대부료율은 이 조례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외에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50 이상으로 한다. 다만, 공유림 등을 토석채취를 목적으로 대부하는 경우에는 그 채취료와 지형변경으로 인하여 장래 산림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구역의 입목 또는 임산물의 가격을 대부료에 추가하여야 한다.(2016.12.28.)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대부료율은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40 이상으로 한다.

1. 도시계획에 저촉되어 대부목적으로서의 활용에 지장이 있는 재산(2014.10.01)

2. 청사의 구내재산으로서 공익상 필요하거나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산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대부료율은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25 이상으로 한다.

1. 공용·공공용의 목적에 사용하는 재산

2.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에 사용하는 재산

3.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또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1항제1호, 제2호에 따른 종교단체가 그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2014.10.01)

④ 주거용으로 대부하는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20 이상으로 한다.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에게 주거용으로 대부하는 경우에는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10 이상으로 할 수 있다.(항신설 2014.10.01)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대부료율은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10 이상으로 한다.(항이동 2014.10.01)

1. 농경지를 실경작자에게 경작의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2. 삭제(2016.12.28.)

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벤처기업집적시설의 개발 또는 설치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설치·운영자에게 대부하는 경우(2014.10.01)

4. 군수가 벤처기업 창업지원을 위하여 조성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 창업자 또는 지원관련 개인·단체·법인 및 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

5.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에 따른 수도권 인구집중유발시설을 영 제29조제1항제13호에 따라 이전하는 자에게 대부하는 경우

6. 상시 종업원 30명 이상을 고용하거나 원자재의 30퍼센트 이상을 군 지역에서 조달하려는 기업의 공장 또는 연구시설을 유치하기 위하여 대부하는 경우

⑥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경영하는 업종(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은 제외한다)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30 이상으로 한다.(항신설2014.10.01. 2016.12.28)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4조(사용료)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연간 사용료는 시가(時價)를 반영한 해당 재산 평정가격(評定價格)의 연 1천분의 10 이상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월할(月割) 또는 일할(日割)로 계산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행정재산의 사용료에 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 따른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중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한 시설인 행정재산에 대해서는 그 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간별이나 횟수별로 그 재산의 사용료를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용료를 계산할 때 해당 재산의 가격평가, 전세금의 산정, 일시 사용 등에 관하여는 제31조제2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3.6.21.>

④ 법 제2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용·수익허가를 갱신하는 경우 갱신된 사용·수익허가 기간의 연간 사용료에 관하여는 제31조의2를 준용한다. <신설 2013.6.21.>

⑤ 제13조제5항에 따라 일수별 또는 시간별로 행정재산을 사용·수익하게 하는 경우 그 일수별 또는 시간별 사용료의 산정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신설 2016.7.12.>

⑥ 사용료의 납부기한은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로 하되, 사용 전에 미리 내야 한다. <개정 2013.6.21., 2014.7.7., 2016.7.12.>

⑦ 법 제22조제2항 단서에 따라 사용료를 분할납부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사용료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연 4회의 범위에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8.4., 2013.6.21., 2016.7.12.>

⑧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보증금을 예치하게 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피보험자로 하는 이행보증보험을 체결하게 하는 경우 그 금액은 연간 사용료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로 한다. <신설 2010.8.4., 2013.6.21., 2016.7.12.>

[거창푸드종합센터 관리위탁 기간연장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2017. 2. 15.
- 나. 제 출 자: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2017. 2. 16.

2. 제안이유

- 관내에서 생산·가공된 안전하고 우수한 품질의 거창푸드를 안정적으로 공급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보장, 농촌 환경의 보존과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설치한 거창푸드종합센터의 효율적 관리운영과 그간의 운영 노하우 활용을 위해 위탁 운영 기간을 연장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시 설 명: 거창푸드종합센터
- 위 치: 거창군 거창읍 거함대로 3372
- 규 모
 - 건 물: 712.5m²(지상 2층)
 - 건 물: 392m²(준공: 2007. 12. 28.)
 - 시 설: 전시판매대 등 13종, 소분실 장비 26종, 도정기 4종, 냉장탑차 등 차량 3대

○ 주요 사업내용

- 전시판매장 운영, 농산물 순회수집 및 배송사업, 소량생산 농산물 꾸러미 판매, 잡곡 동정시설 운영, 인터넷 쇼핑몰(거창몰) 운영 등

○ 운영계획

- 위탁단체: 거창공유농업사회적협동조합(이사장 김제열)
- 위탁기간: 2016. 12. 24. ~ 2019. 12. 23.(3년간)
 - 1회 위탁기간: 2013. 12. 24. ~ 2016. 12. 23.(3년간)
- 인력현황: 이사장 1명, 상임이사 1명, 업무담당 4명
- 위탁내용: 거창푸드종합센터 운영관리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조, 제2조, 제12조
-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5조
- 「거창푸드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9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18조

○ 위탁기간 연장 계획안

- 위탁기간: 2016. 12. 24. ~ 2019. 12. 23.(3년간)
- 추진상황
 - 2016. 10. 31.: 거창푸드종합센터 운영평가
 - 2017. 01. 20.: 위탁기간 갱신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 소요예산: 250,000천원(2017년 당초예산 확보)

5.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관내에서 생산·가공된 거창푸드를 안정적으로 공급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보장과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관리·운영 중인 『거창푸드종합센터』의 민간위탁 기간이 2016. 12. 23. 만료됨에 따라 기간연장 운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서,
-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르면 “수탁기관에 재계약 할 때에도 위탁기간 만료일 60일 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거창푸드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거창푸드종합센터의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수탁자의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5년 이내의 기간으로 갱신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제10항에 따르면 “사무의 민간위탁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의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이 함께 혼용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동 운영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르면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수탁기관 거창공유농업사회적협동조합(이사장 김제열)과 3년간 1회 위탁기간 연장에 따른 관련규정상 저촉사항은 없으나,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위탁기간 만료일 60일 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함에도 60일이 경과한 2017. 2. 15.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회에 제출한 부분에 대하여는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하면서 가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검토되었음.

6. 참고자료



관련법령 발췌

□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지역농산물 이용촉진과 농산물의 직거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및 농가의 소득 증대와 소비자의 이익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산물"이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가목의 농산물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산물가공품을 말한다.

2. "지역농산물"이란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구는 "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생산·가공된 농산물로서 해당 지역에서 유통·판매되는 것을 말한다.

3. "농산물 직거래"란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접 거래하거나, 중간 유통단계를 한 번만 거쳐 거래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자신이 생산한 농산물을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행위

나. 생산자로부터 농산물의 판매를 위탁받아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행위

다. 생산자로부터 농산물을 구입한 자가 이를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행위

라. 소비자로부터 농산물의 구입을 위탁받아 생산자로부터 이를 직접 구입하는 행위

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산물 거래 행위

4. "농업인"이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가목의 농업인을 말한다.

5. "생산자"란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업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6. "생산자단체"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를 말한다.

7. "농산물 직거래사업장"이란 농산물 직거래가 이루어지는 사업장으로서 농산물 직매장, 농산물 직거래 장터, 농산물 인터넷 쇼핑몰, 농산물 공동체 직거래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8. "농산물 직거래사업자"란 농산물 직거래를 업(業)으로 하는 자로서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9. "지역농산물 취급사업자"란 지역농산물의 유통·가공을 업으로 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제12조(농업인의 조직화)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역 또는 인근 지역의 소규모 농업인을 조직화함으로써 다양한 품목의 소량 생산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소규모 농업인을 조직화할 때에는 고령 농업인 및 여성 농업인을 우선적으로 배려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소규모 농업인의 조직화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등) ① 군수는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사무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군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정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군민생활과 직결된 단순행정사무(개정 2013.6.12)

② 군수는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제6조에 따른 거창군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민간위탁 할 수 있다.(개정 2013.6.12)

③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는 국가·도위임사무는 위임기관의 장의 승인을 미리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군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이 경우 자치사무에 있어 같은 수탁기관에 재계약 할 때에도 위탁기간 만료일 60일 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개정 및 후단신설 2013.6.12)

④ 군수는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3.6.12)

제5조 (수탁기관의 선정) ① 군수는 민간위탁사무의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인력과 기구, 재정부담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의 정도, 책임 능력과 공신력, 지역간 균형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한 기관을 수탁기관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제1항의 심사 기준 및 심사항목별 배점기준 등을 명시하여 공고한다.(전문개정2013.6.12)

③ 수탁기관을 공개모집할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제출 하도록 하고, 해당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제1항의 선정기준에 따른 적격 기관을 선정하도록 한다.(개정 2013.6.12)

제9조(협약체결 등) ① 군수는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관과 협약을 체결 하여야 하며, 협약내용은 반드시 공증을 하여야 한다.

② 협약서에는 수탁기관의 의무, 위탁내용, 위탁기간, 예산지원액 및 협약내용 위반 시 의무이행 등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군수는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재협약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민간위탁 사무처리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의 적정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3.6.12.)

□ 거창푸드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조례

제29조(운영위탁) ① 군수는 거창푸드종합센터의 전문적 관리와 이용을 촉진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그 시설의 운영과 관리를 비영리법인에게 위탁운영(이하 “위탁”이라 한다)하게 할 수 있다.

② 거창푸드종합센터의 위탁을 받으려는 자는 규칙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군수는 위탁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거창푸드 종합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인력과 기구, 재정부담능력, 시설과 장비 확보, 기술보유의 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한 수탁기관을 선정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위탁운영을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군수의 지도·감독을 받는다.

④ 제3항의 협약서에는 수탁자의 의무, 위·수탁내용, 위·수탁기간, 유통전문인력 확보, 협약내용을 위반하였을 경우 의무이행 등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⑤ 거창푸드종합센터를 위탁하는 경우 그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수탁자의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5년 이내의 기간으로 갱신할 수 있다.

⑥ 군수는 거창푸드종합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면 위탁에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⑦ 군수는 거창푸드종합센터 운영상 필요한 농산물 확보 등의 비용을 운전자금으로 지원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보유금액과 사용내역 등이 포함된 운전자금

관리현황 보고서를 매년 1회 이상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항신설 2015.12.23.)

□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제18조(관리위탁 기간의 갱신) ① 영 제1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기간을 갱신받고자 하는 관리수탁자는 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을 하여야 한다.(2014.10.01)

1. 관리위탁 재산의 표시
2. 관리수탁자의 표시(조직, 예산·결산, 사업실적 등) (2014.10.01)
3.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평가회사가 평가한 신용평가서

4. 그 밖에 관리·운영 능력평가와 관련한 실적 등 필요한 사항

② 군수가 제1항에 따른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기간의 갱신 여부를 결정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평가항목을 고려하여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관리위탁재산의 관리·운영능력
2. 관리수탁자의 재무구조의 안정성(2014.10.01)
3. 위탁계약 또는 협약사항의 이행여부
4. 영 제19조제4항 해당여부 (호신설 2014.10.01)
5. 그 밖에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도 등 필요한 사항(호이동 2014.10.01)